
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2. . 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구성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과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선언적 조문을 명시적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4조의3제2항의 일부 조문 변경
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2항 중 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”를 “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제4조의3(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생략)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u>	제4조의3(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